

- 약관명 :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약정서(구매기업용) (5-06-0116)
- 시행예정일: 2023.04.18. (예정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: 적용
-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(용어의 정의) ~ 제13조 (약정의 해지 등) <생략></p> <p>제14조(정보제공 동의)</p> <p><u>본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해당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u></p> <p><u>1. 판매기업이 판매대금 추심을 위하여 본인의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정보를 인터넷뱅킹 등으로 조회하는 경우 판매기업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</u></p> <p><u>2. B2B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 및 자금결제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은행이 MP에게 제공</u></p> <p><u>가.본인의 구매자금대출한도 및 대출잔액, 연체정보 등</u></p> <p><u>나.신용정보관리규약상 본인에 관한 '연체 등' 정보(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등)</u></p> <p><u>3. 역구매자금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를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의 이용정보 및 구매자금대출 관련 내역을 판매기업에게 제공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1조(용어의 정의) ~ 제13조 (약정의 해지 등) <좌동></p> <p>제14조(정보제공 동의)</p> <p><삭제></p> <p><u>본인은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MP 및 판매기업에게 다음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u></p> <p><u>1. 판매기업에게는 구매기업에 대한 기업명(또는 상호명)정보, 약정 정보,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</u></p>	<p>문구 정비 및 1,3항 중복으로 3항 삭제</p>

제15조(손실부담 및 면책) ~ 제 18조(기타 특약사항) <생략>	<u>2. MP에게는 구매기업에 대한 기업명(또는 상호명) 정보, 약정 정보,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</u> 제15조(손실부담 및 면책) ~ 제 18조(기타 특약사항) <좌동>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